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9(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10. 15

나. 제안자 : 전원기 의원외 7인

다. 회부일자 : 2010. 10. 18

라. 상정일자 : 2010. 10. 27 (제188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전원기 의원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차량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근 시·도의 리스차량의 등록을 우리 시로 유도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 지방세법에 의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를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승용차 신규등록 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채권매입요율 조정

가.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은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하고

나. 배기량 2,000cc 이상은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6으로 함.(안 별표1의 제1호 가목)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별표 2의 제2호 타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조례안은

- 1,600cc 이상 신규등록 차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리스차량에 대하여 우리시로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파손된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시 등록, 인·허가와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은 자동차를 등록할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신규차량 등록 시 채권매입 요율을 인하하는 배경은

- 현재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리스법인 차량의 경우 지사법인이 있는 경우 소재 시·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리스법인의 경우 전국적으로 판매한 차를 채권매입요율이 낮은 경남 등의 시·도에 등록하고 있어 지방세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등록에 따른 지방세 세수를 확대하고자 신규자동차 등록채권 매입
요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 우리시가 신규등록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요율을 일률적으로 6% 인하
할 시 2009년 기준으로 계상할시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채권 매출이
339억원 감소하며
- 지방세는 최소 55억원에서 최대 71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표1] 리스차량 추가 등록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수입

(단위 : 억원)

차량가액	차량판매대수(대)				비고
	2,000대	5,000대	7,000대	10,000대	
3,000만원	55	137	192	275	K5
3,518만원	69	172	241	345	K7 VG350
5,134만원	93	233	327	467	오피러스GH380
8,680만원	143	357	500	715	에쿠스VS380

- 채권매입요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이 감소하지만 지역개발
채권은 연2.5%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로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
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2] 채권매입요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차량 취득·등록세) 수입 변화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9	증가액	증가율
전 국	15,303	20,711	5,408	35.3%
인 천	750	990	240	32.0%
경 남	789	2,862	2,073	262.7%

<참 고 1>

- 전국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비율 -

매입대상 시·도	1000cc이상 ~1600cc미만	1600cc이상 ~2000cc미만	2000cc이상	비 고
서 울	9/100	12/100	20/100	도시철도공채
부 산	7/100			“
대 구	4/100	4/100	7/100	“
인 천	6(9)/100	8(12)/100	12(20)/100	지역개발(도시철도)
광 주	6/100	8/100	12/100	도시철도공채
대 전	6/100	8/100	12/100	“
울 산	6/100	8/100	12/100	지역개발공채
경 기	6/100	8/100	12/100	“
강 원	6/100	8/100	12/100	“
충 북	6/100	8/100	12/100	“
충 남	6/100	8/100	12/100	“
전 북	6/100	8/100	12/100	“
전 남	6/100	8/100	12/100	“
경 북	6/100	8/100	12/100	“
경 남	-	4/100	7/100	“
제 주	6/100	8/100	12/100	“

<참 고 2>

-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공채 용도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계	자동차신규	자동차이전	기타허가신고	각종계약체결	비고
계	1,952 100	855 44	280 14	83 4	734 38	
지역개발채권	1,407 100	653 46	146 10	77 6	531 38	2009년도
도시철도공채	545 100	202 37	134 25	6 1	203 37	2009년도

- 우리시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2009년도) -

(단위 : 대, %)

구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계	79,154	65,090	82.2	3,580	4.5	10,204	12.9	280	0.4
신조차	77,048	63,217	82.0	3,525	4.6	10,116	13.1	190	0.2
수입차	1,699	1,577	92.8	5	0.3	39	2.3	78	4.6
부활차	407	296	72.7	50	12.3	49	12.0	12	2.9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차준택, 신동수 위원
 - 지방세 55억에서 715억원 증가 추산이 가능한지, 지방채 증대 세수 추계는 반영이 되었는지
 - 요율 인하시 타시·도에서도 요율을 낮춘다면 지역개발채권 매출 규모만 줄어들 경우 대책

< 답 변 >

- 전원기 의원, 정태욱 기획관리실장
 - 채권매입요율 인하 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리스차량 등이 우리 시로 유입될 경우 지방세 확보 및 채권매출액 동반 상승이 예상됨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전원기, 차준택, 허회숙 위원
-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6명)

7.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 1.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상단 “[별표 1](제9조 관련)”을 “[별표 1]”로 하고, 제목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을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으로 하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고
① 1,000cc이상	등록세 과표의 6/100	
② 1,600cc이상	등록세 과표의 6/100	
③ 2,000cc이상	등록세 과표의 6/100	

별표2의 제2호(매입면제대상)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허가. (「지방세법」 제108조 적용대상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 제268조 적용대상에 한함)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제9조 관련)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현행		개정안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대상	매입기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② 1,600cc이상 ③ 2,000cc이상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② 1,600cc이상 ③ 2,000cc이상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8/100 등록세과표의 12/100 등록세과표의 3/100 등록세과표의 3/100 등록세과표의 2/100 등록세과표의 1/100 등록세과표의 1/100 등록세과표의 3/100 등록세과표의 4/100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1.5/100 등록세과표의 1.5/100 등록세과표의 1/100 등록세과표의 0.5/100 등록세과표의 0.5/100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② 1,600cc이상 ③ 2,000cc이상 나 ~ 바(현행과 같음) 2. 자동차 이전등록 가 ~ 바(현행과 같음)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6/100

현 행		개정안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대상	매입기준
<p>3. 각종 허가</p> <p>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p> <p>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전 ·답)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p> <p>다. 골프장 등록</p> <p>4. 건설공사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용역 계약,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지차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p>	<p>점·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가시는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점·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p> <p>m²당 1,500원</p> <p>m²당 3,000원</p> <p>m²당 60원</p> <p>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 일 경우는 제외함)</p>	<p>3. 각종 허가</p> <p>가 ~ 다(현행과 같음)</p> <p>4. 건설공사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용역 계약,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현행과 같음)</p>	

[별표 2]

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 (제10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정안
1.매입면제기관	<p>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p> <p>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p> <p>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p> <p>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p> <p>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p> <p>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p> <p>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p>	<p>가. ~ 아. (현행과 같음)</p>
2.매입면제대상	<p>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p> <p>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 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p> <p>다.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p> <p>(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p> <p>(3) 「고엽체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체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p> <p>마. 각종 허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 ○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p>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따름.</p> <p>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p> <p>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p> <p>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p> <p>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2년12월31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 (“자”목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다. 천재지변 등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허가 (지방세법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지방세법 제268조에 한함)</p> <p>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p>